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훈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159
----------	------

발의 년 월 일: 2025년 10월 17일
발의자: 허훈 의원(1명)
찬성자: 강석주, 고광민, 김길영,
김영철, 김재진, 김태수,
남궁역, 서상열, 심미경,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원형, 홍국표, 황유정
의원(15명)

1. 제안이유

- 도시계획위원회로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합(25.7)함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위원회로 개편 예정임
- 심도있고 신속한 심의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고정된 위원을 두지 않고 개최 시 상정 안건에 따라 해당 안건을 가장 잘 심의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재적 의원 규정을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하는 규정을 신설함 (안 제56조제4항)
- 나.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 개의 규정을 구성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는 것으로 변경함 (안 제56조제5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2항 중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을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로 하고, 제56조제4항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등을 구성된 분과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56조제5항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구성 분과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한다.

제56조제6항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를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6조제7항을 신설하여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6조(분과위원회)</p> <p>① (생략)</p> <p>② 분과위원회는 <u>위원 중에서 선출한</u> 5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p> <p>③ (생략)</p> <p>④ <u>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분과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u>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u></p>	<p>제56조(분과위원회)</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분과위원회는 <u>위원 중에서</u> 5명 이상 17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하 “분과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u>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의 안건과 분과위원 구성을 확정하고, 회의 일시, 장소 등을 구성된 분과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의 배포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이 있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⑤ <u>구성 분과위원(위원장이 제4항에 따라 구성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분과위원 과반수의 찬</u></p>

의 심의 · 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
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
도로 정한다.

<신 설>

성으로 의결한다.

⑥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중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심
의 · 의결은 시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 · 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분과위원회의 심의 · 의
결 사항을 차기 시도시계획위
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
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
도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로 도시재생위원회를 통합함에 따라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2분과 위원회로 개편 예정으로 심도있고 신속한 심의를 추진하고자 함
- 조례 제56조(분과위원회) 제2항 및 제4항, 제5항, 제6항, 제7항을 수정 및 신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고정된 위원을 두지 않고 개최 시 상정 안건에 따라 해당 안건을 가장 잘 심의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재적 의원 규정을 변경하고자 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현

추계분석관 김진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